



재해 개요

- 2023. 10. 30.(월) 10:30경, 경상북도 □□시 △△동 소재 「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재해자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철골 보 위에서 갈고리가 달린 로프를 아래로 던져 추락방호망을 당겨 올리려는 순간, 중심을 잃고 약 3.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안전대 부착설비 미 설치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3.7m높이의 폭이 좁은 철골보 위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
- 안전시설물 설치 중 추락위험 미 인지
 - 사전 위험성 평가 등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중 발생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 - 철골 보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안전시설물 설치 중 추락 위험 관리 철저
 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높은 장소에서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추락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개선대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